제 9 조(기금운용관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 ③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 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,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제 9 조(기금운용관) ① ··기금운용관··기금출납원 ② 기금운용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기금출납원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③ ··분임기금운용관······분임기금출납원·· ④ 분임기금운용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분임기금출납원···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

다. 상정일자 : 95. 5. 22

라. 의결일자 : 95. 5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

나. 내　　용

-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
- 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
- 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
- 분임기금출납명령관 → 분임기금운용관
- 분임기금출납공무원 → 분임기금출납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해 당	없 음

4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없음

6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□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

의안번호	385
의 결 년 월 일	95. 5. 30 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1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ㅇ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[대통령령 제13981호('93. 9. 23)]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법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ㅇ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. 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. 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(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)

ㅇ 분임기금출납명령관 → 분임기금운용관 · 분임기금출납공무원 → 분임기금출납원(안 10조 제3항 및 제4항)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0 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

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"분임기금출납명령관"을 "분임기금운용관"으로, "분임기금출납공무원"을 "분임기금출납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10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 ③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 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,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	제 10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 ② 기금운용관은 시의 보건사회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 ③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분임기금운용관………분임기금출납원……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④ 분임기금운용관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분임기금출납원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………… .

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

다. 상정일자 : 95. 5. 22